
The Beauty of HOLINESS

A SPIRIT-FILLED LIFE. A HOLY CALLING.

글로벌 감리교회 2026년 총회
9월 5일 토요일
—
데일리 저널

본회의 · 감독 서품식
요하네스버그 샌드턴 컨벤션 센터

목차

오늘의 일정	2
변경 사항 및 정정 사항	3
본회의 회의록	4
청원	12
의회	12
헌법, 연대 조직, 재정	12
교리와 성례전	13
사회적 증언	15

KUDO



본회의

<https://qrco.de/bgyc5q>

오늘의 일정 — 9월 5일 토요일

- 06:45 – 09:30** GC26 셔틀 호텔
- 07:00 – 13:45** 전시관 개관
- 07:00 – 08:00** 도착 후 휴식 시간
- 07:00** 의사일정위원회
- 07:30 – 09:00** 등록 및 영접
- 07:45** 봉헌 기도
- 07:45** 예배를 위한 문이 열립니다
- 08:15 – 08:45** 예배
- 사이먼 마폰다의 설교
 -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 죽어야 살 수 있다
 - 마태복음 16:24-25; 갈라디아서 2장 (특히 2:19-21); 골로새서 3:1-11
- 08:45 – 09:05** 전환
- 09:05 – 10:30** 본회의
- 의사일정 위원회 보고서
 - 입법 위원회의 조치
 - 총회 비서 선거 - 제시카 라그론
- 10:30 – 11:00** 휴식 시간
- 11:00 – 12:30** 본회의
- 조직 개편안 채택 및 입법 위원회의 조치
- 12:30 – 13:45** 식사 플랜에 가입한 분들에게는 현장에서 점심이 제공됩니다.
- 12:30 – 14:00** GC26 셔틀 호텔
- 13:15** 봉헌 기도
- 13:45 – 15:00** 본회의
- 입법 위원회의 조치
- 15:00 – 15:30** 준비 시간을 갖습니다
- 15:00** 봉헌 기도
- 15:30 – 17:00** 감독 서품식
- Greenway 감독의 설교
 - 봉헌하여 봉사에 헌신하며
 - 열왕기상 3:1-14
- 17:00 – 18:30** GC26 셔틀 호텔
- 17:00** 모든 구역 철수 및 해체

9월 6일 일요일

- 07:00 – 11:00** 모든 GC 참가자는 호텔에서 체크아웃해야 합니다(사전에 별도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제외).

변경 사항 및 정정 사항

청원에 대한 정정

이전 호에 신고된 한 청원 건에 대해, 해당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이후 변경되었습니다. 당시 기록된 대로 인쇄된 내용은 정확했으나, 그 이후 기록이 변경되었습니다.

청원안 제1025호 — 타인종·다문화 교육 (보고서 344쪽)

- 목요일자 데일리 저널에 ‘참조’로 보도되었으며, 투표 결과는 찬성: 8 찬성 / 0 반대 / 0 기권 정정: 참조됨, 투표 결과는 찬성: 25 찬성 / 1 반대 / 1 기권 처분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회의록

2026년 9월 4일 금요일

회의는 10:00에 개최되었다. Carolyn Moore 감독은 기도로 회의를 시작하고 오전 일정을 주재했다. 의제 위원회 의장인 노마 모리슨(어퍼 미드웨스트)이 당일 의사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 선거, 이어서 입법 청원 순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순서는 하루 종일 유지될 예정입니다. 휴식 및 식사 시간은 지난날과 동일하며, 당일 진행 상황에 따라 19:30부터 21:30까지 저녁 회의가 열릴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결정은 오후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오전에는 Moore 감독이, 오후에는 Mark J. 웹 감독이 집전할 예정이며, 저녁 시간대에도 집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날의 의사일정은 거수 투표를 통해 승인되었다.

대표단은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인쇄된 위원회 및 소위원회 후보자 명단을 최종 점검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수정 사항의 전체 목록은 GC2026 종합 회의록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총회 서기인 Tom Lambrecht 목사는 이날 저녁에 게재된 수정된 ‘위원회 및 소위원회 후보자 명단’을 바탕으로, 주교 선거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워크시트 방식을 통해 총회 산하 위원단 및 소위원회 위원 선출 과정을 설명하였다.

Tsvetan Iliev 목사(불가리아)는 후보자 명단이 재인쇄될 때까지 위원회 및 소위원회 선거를 연기할 것을 동의했다. Rev. Matt Seel (Mid-South)는 찬성 발언을 했고, Rev. Jeremy Auvil (North Alabama)과 Central Russia의 델리게이트 한 명은 반대 발언을 했다. 모션/동의 투표 결과, 연기 요청은 승인되지 않았다.

샘 그레고리(웨스트 플레인스)는 전날의 진행 속도로 인해 일부 델리게이트가 뒤처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델리게이트들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각 표결 전에 추가 시간을 허락해 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했다. Moore 감독은 이날의 진행 속도가 Jeff Greenway 감독 때보다 더 느릴 것이라고 답했다.

Rev. Jason Burnham (Trinity)은 Rev. Ryan Barnett (Mid-Texas)가 이전에 제기한 우려에 동조하며, 『교리와 장정』이 목회자가 구성원의 최소 절반을 차지하도록만 요구하는 모든 위원단,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후보자를 하나의 투표용지에서 함께 투표하되, 필요한 수의 목회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절차 마지막에 목회자 득표 수를 제한할 것을 동의했다. 그 동의안에 대한 찬성이 제기되었다. Forbes Matonga 목사(짐바브웨)가 일어나 해당 모션/동의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Tom Lambrecht 목사는 『교리와 장정』이 총회가 위원단 위원 중 “적어도 절반은 평신도”로 선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오히려, 《규율》은 각 연대 위원단의 최종 멤버십 중 최소 절반은 평신도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안된 후보자 리스트는 사실 최소 절반이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는 목회자보다 평신도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연대 협의회에서 추가로 선출되는 위원단이 각 위원단의 최종 구성을 결정하게 되며, 평신도 구성원의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램브레히트는 현재 진행 중인 선거 과정이 규율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함은 자신의 모션을 다음과 같이 재차 밝혔다. 즉, 『교리와 장정』에서 위원단의 구성원 중 최소 절반을 평신도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규율상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목회자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목회자 후보와 평신도 후보를 하나의 투표용지에 함께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 투표용지에 부착된 이 모션/동의를 가결되지 않았다.

이어 총회는 수정된 후보자 명단을 바탕으로 위원단 및 위원회 위원 선거 절차를 진행했으며, 기도로 회의를 시작했다.

연대 협의회 — 목회자 (4석)

1차 투표용지: Gabriella Kopas 목사 (중부 유럽) | 210/337 (62.3%) | 당선

투표용지 1: Jessica LaGrone 목사 (트리니티) | 201/337 (59.6%) | 당선

투표용지 2: 당선자 없음 (340)

투표용지 3: Rev. Henriette Okele (Dem. 콩고 공화국) | 239/346 (69.1%) | 당선

3차 투표용지: Luciano 다 실바 목사 (파나마) | 236/346 (68.2%) | 당선

연대 협의회 — 평신도 (4석)

투표용지 1: 진 플로어 (앨라배마 에메랄드 코스트) | 271/314 (86.3%) | 당선

실라 산카르 (인도) | 266/314 (84.7%) | 당선

줄리엣 제레 | 259/314 (82.5%) | 당선

태미 스토티 (노스캐롤라이나) | 254/314 (80.9%) | 당선

이번 투표용지에서 4명 이상의 평신도 후보자가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의장은 득표수 상위 4명이 당선되었다고 선언했으며, 위의 4명을 당선자로 지명했다.

연대 협의회가 선출되자, 회의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목회자 4명과 평신도 3명을 선출하는 Council on Appeals로 넘어갔다. 델리게이트들이 제시된 후보자 리스트에서 별표가 지워지지 않았음을 지적함에 따라, 1차 목회자 투표가 취소되었다가 재개되었다. 맷 커슨스(어퍼 미드웨스트)는 대체 대표 선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물었고,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위원회 — 목회자 (4석)

투표용지 1: 리처드 존스 | 180/334 (53.9%) | 당선

투표용지 1: 스티븐 벨 | 172/334 (51.5%) | 당선

투표용지 2: John Kalambo 목사 (잠비아) | 232/336 (69.0%) | 당선

투표용지 3: 다니엘 풀턴 | 250/363 (68.9%) | 당선

Dr. 제리 콜라 목사(그레인 코스트)는 점심 리세스 시간에 앞서 회종을 이끌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톰 램브레히트는 회의를 13:45에 다시 소집한다고 발표했다.

점심 시간

의회는 13:46, 점심 리세스를 마치고 다시 소집되었으며, 감독 Webb과 감독 Kenneth Levingston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았다. Webb 감독은 빌립보서 2장을 낭독했고, Levingston 감독은 기도를 드렸다. 두 감독은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의장직을 번갈아 맡기로 합의했으며, 모든 선거 절차는 Levingston 감독이 주관하기로 했다.

회의는 항소위원회의 선거 절차로 돌아가, 현재 세 명의 평신도 회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항소위원회 — 평신도 (3석)

1차 투표용지 (유효표 316표, 과반수 159표): 선거 불성립

2차 투표용지 (유효표 316표, 당선에 필요한 표수 159표): 론 엔스 | 182/316 (57.6%) | 당선

투표용지 2: 베아트리카 일리아 (나이지리아 북부) | 168/316 (53.2%) | 당선

3차 투표용지 (유효표 349표, 당선에 필요한 표수 175표): 비키 존슨 | 187/349 (53.6%) | 당선

Michael Sawicki 목사(그레이트 레이크스)의 요청에 따라, 총회는 한 내빈이 연설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초청자였던 닥 아비아데는 자신의 봉사 기간이 끝났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며, 자신의 이름을 후보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톰 램브레히트는 항소위원회 대체위원들이 선출 순서에 따라 선출되어 임명될 것이며, 위원들은 이전 4년간 임기 기간과는 달리 소속 연회의 이사회와 기관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단, 해당 연회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스스로 심리를 회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항소위원회 — 목회자 대체위원, 선거 순서대로 (4석)

투표 수 359표, 유효표 305표, 필요표 153표

1위: James “제이” 테렐 주니어 목사 (플로리다) | 192/305 (63.0%) | 당선

2위: Paul Yerima Idi 목사 (나이지리아 북동부) | 176/305 (57.7%) | 당선

3위: Ebenezer Belleh 목사 (그레인 코스트) | 167/305 (54.8%) | 당선

4위: 엘리엇 치칸제레 | 162/305 (53.1%) | 당선

항소위원회 — 평신도 대체위원, 선거 순서대로 (3석)

1차 투표용지 (유효표 339표, 당선에 필요한 표수 170표): 제임스 배니스터 | 170/339 (50.1%) | 당선

2차 투표용지 (유효표 343표, 당선에 필요한 표수 172표): 기디언 살라탄 | 182/343 (53.1%) | 당선

투표용지 3: 선거 불성립 (유효표 354표, 과반수 178표 필요)

4차 투표용지 (유효표 356표, 당선에 필요한 표수 179표): 마르티나 루키치 | 233/356 (65.4%) | 당선

이어 총회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목회자 6명과 평신도 6명으로 구성된 회의위원단을 선출했다.

회의 위원단 — 목회자 (6석)

투표 수 358표, 유효표 284표, 필요표 143표 — 6명 전원이 당선됨

조나단 리, Clark Atkins 목사(트리니티), Wilton Odongo 목사(케냐),

마이클 모리세이, 론다 야고사,

John Howard Jr 목사 (노스캐롤라이나) | 168/284 (59.2%) | 당선

회의 위원단 — 평신도 (6석)

투표 수 359표, 유효표 300표, 필요 표수 151표:

로리 스미스 (미시시피-서부 테네시) — 당선

크리스틴 메인스 (그레이트 레이크스) — 당선

브레이언 조지 음와칼링가 — 당선

제임스 마사코이 — 선거에서 당선

폴린 은툼부라 — 선거에서 당선

미키 힐러 — 선거에서 당선

Webb 감독이 의장석에 돌아와 의정 업무를 재개했다. Conferences 입법 위원회 의장인 Rev. Beth Ann Cook (Great Lakes)가 일괄동의안 4A에 포함된 위원회 지지 청원들을 상정했다. 데이비드 김슨의 요청에 따라, 10명의 델리게이트가 이를 지지함에 따라, 청원안 1028호가 일괄동의안 4A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축소된 일괄동의안 4A(청원 1228호 및 1456호)는 거수 투표를 통해 승인되었다.

Cook은 이어 목요일 합의된 회의순/캘린더에서 제거되었고 위원회가 찬성 1표 대 반대 38표로 지지하지 않도록 권고한, ‘공정하고 동등한 델리게이트 대표성’에 관한 청원 1059호를 상정했다. 래리 웰스(미드사우스)는 청원 제1281호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청원에 대한 심의를 연기할 것을 동의했다. 모션/동의 투표 결과, 연기 요청안은 승인되지 않았다.

청원안 1059호 자체에 대해 벤 보우먼(미드사우스)은 비례대표제가 이미 교회의 위원단과 연회에서 실천되고 있는 평신도와 목회자 간의 평등한 파트너십을 총회 차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홀리 조이(하트랜드)와 Michael Sawicki 목사(그레이트 레이크스)는 모두 입법 위원회의 자체 심의 내용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비례대표제가 규모가 작거나 성장 중인 연회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Matt Seel 목사(미드사우스)가 찬성 발언을 했다. 쿡은 “동등한 대표성이 아니라 비례 대표제가 더 공정한 기준”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표를 권고하는 것으로 발언을 마쳤으며, 동시에 모든 연회에 발언권을 부여하겠다는 총회의 의지를 단언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알려진 멕시코 출신의 일반인/평신도 델리게이트 한 명이 일어나 해당 청원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손들기 투표 결과, 청원안 1059호는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Beth Ann Cook 목사(그레이트 레이크스)가 입법 위원회 - 회의의 마지막 안건인 청원안 1245호, 즉 총회 대의원 선출 절차에 관한 헌법 개정안(『교리와 장정』 제207.4단락)을 상정했습니다. 이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13대 0, 전체 위원회에서 36대 1로 부결되었습니다. 청원안 제1245호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회의는 위원단 선거로 돌아가 Discipleship, Doctrine and Just Ministry에 목회자 5명과 평신도 5명을 선출했다.

제자도, 교리 및 공정한 사역 — 목회자 (5석)

1차 투표용지 (유효표 272표, 과반수 137표):

Suzanne Nicholson 목사 (미드사우스) | 220/272 (80.9%) | 당선

비르질리오 올로논 | 164/272 (60.3%) | 당선

Dennis Obadiah 목사 (나이지리아 남부) | 151/272 (55.5%) | 당선

2차 투표용지 (투표 수 356표, 유효표 334표, 당선에 필요한 표수 168표): Kenneth Collins 목사 (미드사우스) | 176/334 (52.7%) | 당선

3차 투표용지 (유효표 348표, 당선 기준 175표): Martin Longanga 목사 (콩고 민주 공화국) | 187/348 (53.7%) | 당선

제자도, 교리 및 공정한 사역 — 평신도 (5석)

투표 수 360, 유효표 316, 필요 표수 159

놀리즈위 스토펙카 | 256/316 (81.0%) | 당선

엘레나 멜니코바 | 253/316 (80.1%) | 당선

파우 아이-본테 | 241/316 (76.3%) | 당선

캐시 로어스 | 242/316 (76.6%) | 당선

크리스타 페티트 | 230/316 (72.8%) | 당선

툼 램브레히트는, 원래 ‘회의 위원단’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간 7명의 목회자 중 한 명이 아직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하게 선출된 적이 없다고 보고했다. 새 투표를 실시하는 대신, 회의는 동일한 최초 투표 기록에서 John Howard도 당선 기준을 넘었음을 확인했고, 추가 투표 없이 그를 그 결과 발생한 공석에 착석시켰다.

이어 총회는 에큐메니칼 관계 위원회에 목회자 4명과 평신도 4명을 선출했다.

에큐메니칼 관계 — 목회자 (4석)

투표 수 358표, 유효표 331표, 필요표 166표

Samson Muzengeza 목사 (짐바브웨) | 301/331 (90.9%) | 당선

Debo Onabanjo 목사 (앨러게니 웨스트) | 292/331 (88.2%) | 당선

바트로슬라브 주판치치 | 289/331 (87.3%) | 당선

사키우사 바카데와타부아 주니어 | 271/331 (81.9%) | 당선

에큐메니칼 관계 — 평신도 (4석)

1차 투표용지 (투표 수 357표, 유효표 320표, 과반수 161표):

칸콜롱고 존슨 (콩고 민주 공화국) | 269/320 (84.1%) | 당선

데비 스몰리 (앨라배마 에메랄드 코스트) | 268/320 (83.8%) | 당선

엘레나 소콜로바 (러시아 북서부 및 벨라루스) | 258/320 (80.6%) | 당선

투표용지 2 (투표 수 359표, 통과에 필요한 표수 180표):

브리짓 더글라스 (그레이트 레이크스) | 230/359 (64.1%) | 당선

사법행정위원회 의장인 James “지미” 타우슨 목사(사우스 조지아)가 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양호한 상태”의 정의에 관한 청원안 1115호는 기각되었으며, 해당 청원안의 내용은 대신 청원안 1130호에 통합되었다. 청원안 1115호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타우슨은 위원회의 핵심 법안인 청원안 1130호를 제출했는데, 이는 『교리와 장정』 제9부(사법 행정)와 별도의 『사법 관행 및 절차 규칙』 문서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었다. 2024년 창립 총회 소집에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회원들로 주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가 2024년 말부터 개정 작업을 시작했으며, 타우슨은 특히 그 작업의 대부분을 담당한 Chris Gadlage 목사(그레이트 레이크스)와 브래드 폴섬(사우스 조지아)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초안은 이번 총회에 상정되기 전에 연대상소협의회, General Episcopacy Committee, 총리사들 및 Tom Lambrecht의 검토를 거쳤으며, 이번 주 사법행정위원회는 추가 개정 44건을 반영했다. 토우슨은 수정된 제1130호 청원안을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Matt O'Reilly 목사(노스앨라배마)가 찬성 발언을 했다. 청원 제1130호가 지지받았습니다.

헌법위원회 의장인 Clark Atkins 목사(트리니티)가 합의된 회의순/캘린더 CCOF 4A(14건)를 상정했다. Jason Burnham 목사(트리니티)의 요청에 따라 청원안 1458호가 제거되었으며, Chris Akers 목사(플로리다)의 요청에 따라 청원안 1216호가 제거되었습니다. 합의된 회의순/캘린더에서 축소된 12개 안건으로 구성된 동의 안건 목록 CCOF 4A가 거수 표결을 통해 채택되었다. 이어 앳킨스는 위원회가 지지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26건의 청원서를 담은 일괄동의안 CCOF 4B를 상정했다. 일괄동의안 CCOF 4B는 거수 투표를 통해 채택되었으며, 해당 안건에 포함된 청원들은 기각되었다.

앳킨스는 개별 심의를 요청하는 청원서 7건을 제출했다. 청원안 1004호(수요일자 데일리 저널, 8면)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가결되었다. 청원안 1025호(목요일자 데일리 저널 14면)가 하나님 나라 확장 위원단으로 회부되었으며, 이는 전라 관련 청원안이 글로벌 통합 위원단으로 추천된 데 이어 진행된 조치입니다. 청원인은 헌법 위원회 회원으로, 이번 회부 조치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안건은 청원안 1088호(목요일자 데일리 저널 14~15면)로, 연회에 성직자의 복리후생(보수, 주택, 건강보험 및 기타 복지제도)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 개정안이었다. Brad Folsom (South Georgia)은 동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 청원의 평신도 델리게이트 자격 문구가 별도로 개별 심의를 위해 제외된 청원 1028호의 상이한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 위해 일어섰고, 의장은 이를 반대 발언으로 간주했다. 목사 Erik Grayson 목사(사우스캐롤라이나)는 이어 청원안 1088호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며, 새로운 복지 기준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교리와 장정』의 현행 제8항(목사관 및 사역자 주택 기준에 한정)을 복원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번 주에 이미 의뢰된 복리후생 연구가 규율서 문구가 변경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엣킨스는 위원회를 대표해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며, 위원회가 목회자의 복지는 연회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견해에 따라 만장일치로 더 포괄적인 문구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Rev. Edward Bromley II (Mississippi-West Tennessee)와 Rev. Steven Taylor (Northeast)는 개정에 찬성 발언을 했고, Rev. James Noble (Mid-Texas)는 반대 발언을 했다. 조쉬 그로스(미시시피-웨스트 테네시)는 찬성 의견을 밝혔고, Wilton Odongo 목사(케냐)는 미국 이외 지역의 목회자에 대한 연금 기준이 전혀 없다는 점과, 이 주제와 관련해 자신이 제출했으나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두 건의 청원안을 근거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전자 투표용지에 부착된 그레이슨 의원의 개정은 찬성을 얻지 못했다. 위원회가 제출한 청원안 제1088호는 이어서 손들기 투표를 통해 가결되었다.

엣킨스는 지난 일요일 이 의회에서 채택된 개정안을 대체하는, 헌법 개정 절차 자체에 대한 장기적인 개편안을 담은 청원안 1097호(목요일자 데일리 저널 16면 하단)를 제출했다. 그는 제안된 제12조의 문구를 전문을 읽어 내렸다:

이 헌법에 대한 개정안은 다음의 경우에만 총회에 제출될 수 있다: 정식으로 소집된 회기에서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승인된 연회; 대표단 3분의 2의 찬성으로 승인되고 그 투표가 의장과 비서에 의해 인증된 연회 대표단; 또는 출석하여 투표한 해당 입법 위원회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승인된 그 입법 위원회 중 하나의 권고에 따라 행동하는 총회. 어떠한 개인도 헌법 개정안을 총회에 직접 제출할 자격을 갖지 못한다. 개인은 연회 총회 또는 연회 대표단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해당 제안서는 위에서 요구하는 공식적인 승인 및 증서를 받은 후에야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원안 제1097호는 손들기 표결을 통해 찬성이 결정되었습니다.

청원안 1197호(목요일자 데일리 저널 16면)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가결되었습니다. 청원안 1281호(총회 사전 준비 자료집 438쪽)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가결되었다.

청원안 제1286호에 대해 위원회는 지지하지 않기로 권고했다. Beth Ann Cook 목사(그레이트 레이크스)는 의장에게 투표 기록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배포된 유인물에는 “0-0-0”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에 엣킨스는 위원회의 실제 투표 결과가 39 대 0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안 1286호는 거수 투표에서 지지받지 못했다.

이 기구는 선거로 돌아갔으며, 재정·행정·연금 및 복지제도 위원회에는 목회자 4명과 평신도 6명이 선출되었다.

재정, 행정, 연금 및 복지제도 — 목회자 (4석)

투표 수 360표, 유효표 317표, 필요표 159표

해리슨 벨 | 272/317 (85.8%) | 당선

Matt Seel 목사 (미드사우스) | 236/317 (74.4%) | 당선

비비안 키니어 (트리니티) | 235/317 (74.1%) | 당선

James Noble 목사 (미드텍사스) | 226/317 (71.3%) | 당선

재정, 행정, 연금 및 복지제도 — 평신도 (6석)

투표 수 361표, 유효표 289표, 필요표 145표

올랜더 보이스 (그레인 코스트) | 259/289 (89.6%) | 당선

셰리 오스틴 | 242/289 (83.7%) | 당선

린지 클라크 | 235/289 (81.3%) | 당선

샘 그레고리 (웨스트 플레인스) | 235/289 (81.3%) | 당선

조이 페리 | 232/289 (80.3%) | 당선

루보 트웨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 | 223/289 (77.2%) | 당선

이어 해당 기구는 총회 위원단 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했는데, 먼저 목회자 6명에 대한 투표가 진행된 뒤 평신도 10명에 대한 투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목회자 투표(투표용지 1)가 진행 중이던 중, 전자 투표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의장은 해당 투표 전체를 무효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기록에서 총회 위원단 목회자는 한 명도 선출되지 않았고, 평신도 투표는 아예 개시되지 않았다.

툼 램브레히트는 오후 일정을 마무리하며, 델리게이트와 내빈들이 남아프리카 교회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보증한 비자로 남아프리카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Kimba Evariste 감독이 식사를 위해 기도를 드린 후, 참석자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를 떠났으며, 19:30에 다시 소집합니다.

저녁 세션

사무총장은 전자 투표 시스템 오작동으로 무효 처리되었던 지난 총회 위원단 목회자 투표가 재실시될 것이라고 보고했으며, 그 이후 투표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회 위원단 — 목회자 (6석, 투표용지 2 — 1차 투표 무효화 후 재실시)

투표 수 345표, 유효표 277표, 필요표 139표

Joy Griffin 목사 (노스 조지아) | 259/277 (93.5%) | 당선

마이크 그랜트 (앨러게니 웨스트) | 253/277 (91.3%) | 당선

찰스 푸노 | 233/277 (84.1%) | 당선

니콜라스 무농고 수키사 | 219/277 (79.1%) | 당선

벤 휴브너 | 206/277 (74.4%) | 당선

Mbingeleli Diko (남아프리카공화국) | 201/277 (72.6%) | 당선

Rev. Jeremy Auvil (North Alabama)은 총회 위원단 평신도 10석 투표에 대한 규칙 적용을 유예하여, 이미 지명된 평신도 10명을 투표 기기가 아니라 거수 투표로 후보자 명단 전체로 선출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 규칙 정지 모션/동의를 반대 없이 거수 표결을 통해 승인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그 후 총회 위원단 평신도 후보자 10명 전원이 반대 없이 거수 투표로 선출되었다.

총회 위원단 — 평신도 (10석)

손을 들어 투표한 결과, 경쟁자 없이 모두 10명이 선출되었다

엘리자베스 애슬리 핑크 (트리니티), 길리엄, 마이크 디오 젠 (나이지리아 남부),

김, 커크, 넬슨, 월터 칼로니에레 오두케 (케냐),

라잔, 테일러, 화이트

이어 회의는 Global Episcopacy Committee로 넘어가 이 위원회에만 요구되는 더 높은 특별다수 기준인 60% 기준으로 목회자 6명과 평신도 6명을 선출했다. 홀리 조이(하트랜드)는 특정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명단이 일부 테이블을 통해 돌고 있었다고 전하며, 선거 운동 자료를 대표단 테이블에서 배포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는 회의 진행 발언을 했다. 의장은 이것이 거룩한 대화의 일부가 아니며, 이미 배포된 자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답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했으나, 이미 진행 중인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 — 목회자 (6석, 60% 투표 기준)

투표 수 359표, 유효표 300표, 필요표 180표

Robin Parr 목사 (노스 조지아) | 265/300 (88.3%) | 당선

조앤 터말립 발렌수엘라 | 262/300 (87.3%) | 당선

Chris Ritter 목사 (그레이트 레이크스) | 261/300 (87.0%) | 당선

애런 오파 양키 | 253/300 (84.3%) | 선출

Kira Yufereva 목사 (러시아 중부) | 251/300 (83.7%) | 당선

Jason Burnham 목사 (트리니티) | 247/300 (82.3%) | 당선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 — 평신도 (6석)

358표 중 312표가 유효 — 6명 전원이 당선

돈 버랜드 (미시시피-서부 테네시) | 289/312 (92.6%) | 당선

패트릭 치바기디 | 279/312 (89.4%) | 당선

브래드 폴섬 (사우스 조지아) | 279/312 (89.4%) | 당선

타이슨 하인스 (하트랜드) | 264/312 (84.6%) | 당선

사라 마허 | 263/312 (84.3%) | 당선

예브게니 세마슈코 | 250/312 (80.1%) | 당선

이어 회의는 하나님 나라 확장 위원단을 선출했다. 목회자 의석은 본회의에서 “한 명을 제외했기 때문에” 4석에서 5석으로 상향 결정되었으며, 평신도는 6명이었다.

왕국 확장 — 목회자 (5석)

투표 수 364표, 유효표 319표, 필요한 표수 160표

사펠 | 226/319 (70.8%) | 당선

마가카 | 224/319 (70.2%) | 당선

파일루마 아페아키 | 197/319 (61.8%) | 당선

Joy Griffin 목사 (노스 조지아) | 187/319 (58.6%) | 당선

Martin Wakubatwa 목사 (콩고 민주 공화국) | 183/319 (57.4%) | 당선

왕국 확장 — 평신도 (6석)

투표 수 359표, 유효표 295표, 필요표 148표

다이애나 브리셀리 (북동부) | 244/295 (82.7%) | 당선

빌 브라운 (하트랜드) | 228/295 (77.3%) | 당선

로비 칼리통기 (잠비아) | 226/295 (76.6%) | 선거에서 선출

엘레나 리오부슈키나 (남부 러시아) | 232/295 (78.6%) | 당선

마리엘라 미하일로바-시데로바 (불가리아) | 234/295 (79.3%) | 당선

안젤로 페레즈 (언약 필리핀) | 230/295 (78.0%) | 당선

이어 총회는 그날 밤 마지막 위원단 선거로 Ministry in Higher Education에 목회자 5명과 평신도 5명을 선출했다.

고등 교육 분야 사역 — 목회자 (5석)

1차 투표용지 (투표 수 358표, 유효표 305표, 필요 표수 153표):

Daniel Gildner 목사 (앨러게니 웨스트) | 238/305 (78.0%) | 당선

Kora Mujinga 목사 (콩고 민주 공화국) | 193/305 (63.3%) | 당선

Leslie Tomlinson 목사 (미드텍사스) | 180/305 (59.0%) | 당선

Thadius Sales 목사 (북동부) | 175/305 (57.4%) | 당선

2차 투표용지 (투표 수 348표, 모두 유효, 당선에 필요한 표수 174표): Brian Ebel 목사 (미드사우스) — 당선

고등 교육 분야 사역 — 평신도 (5석)

투표 수 359표, 유효표 314표, 필요표 158표

카바우아탄 | 270/314 (86.0%) | 당선

코피 | 259/314 (82.5%) | 당선

리사 저드 (사우스캐롤라이나) | 250/314 (79.6%) | 당선

토마스 핀리 (그레이트 레이크스) | 245/314 (78.0%) | 당선

캐서린 설리번 (트리니티) | 203/314 (64.6%) | 당선

Keihwan Ryoo 목사(한국계 미국인)는 개인 권한을 통해, 한국계 미국인 후보자 리스트를 검토 대상에 포함시켜 준 지명위원회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이번 4년간 임기 동안 해당 대표단의 후보 중 누구도 위원단이나 위원회에 선출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 대상에 올랐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향후 연대 협의회와 5개 위원단이 전문성, 균형, 다양성을 고려해 위원들을 추가로 선임할 때, 각 대표단 내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한인계 후보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다른 연회들(한인계 연회 포함)은 향후 6년 동안 이러한 기구에서 단 한 명의 대표도 배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비서는 “Friday PM 1”에서 Council on Appeals의 제1 목회자 대체위원으로 선출된 Rev. James “Jay” Therrell Jr.가 총리사이므로 사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2026년 9월 3일 목요일 회의가 총리사의 Council on Appeals 봉사를 금지하는 규칙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테렐이 사임함에 따라, 제2, 제3, 제4 대체대표가 각각 한 계단씩 순위가 올라갔으며, 총회는 새로운 제4 목회자 대체대표를 선출했다.

향소위원회 — 제4 목회자 대체 위원

1차 투표용지 (투표용지 수 355장, 유효표 355장, 과반수 178표): 선거 불성립

투표용지 2 (투표 수 358표, 모두 유효): Sungwon Nam 목사 (한국계 미국인) | 242/358 (67.6%) | 당선

이로써 이날 저녁의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는 의정 업무로 넘어가며, 교리와 성례전 입법 위원회를 대표해 발표할 Matt O'Reilly 목사를 환영했다.

오라일리 의원은 위원회가 기각을 권고하는 5건의 청원서를 담은 일괄동의안 DS4B를 상정했다. Rev. Wilton Odongo (Kenya)는 청원 1455호(Commission on Discipleship, Doctrine, and Just Ministry가 Articles of Religion에 대한 GMC 주석서를 마련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를 별도 심의를 위해 일괄동의안에서 제외하도록 동의했다. 그러나 그 동의는 안건을 제외하는 데 필요한 다른 9명의 델리게이트 지지를 얻지 못했다. O'Reilly는 Articles of Faith 자체가 통과되면 Assembly of Bishops와 위원단이 이미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가 있으므로 주석서는 불필요하다는 위원회의 견해를 설명했다. 일괄동의안 DS4B가 채택되었습니다.

그 후,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운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의하는 결의안인 제1454호 청원이 별도로 상정되었으며, 이 결의안은 4분의 3 이상의 다수결 투표를 얻어야 통과될 수 있었다. Odongo는 이미 잘 이해되고 있는 개념에는 공식적 정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반대 발언을 했다. Zachery Kingery 목사(어퍼 미드웨스트)와 이스라엘 야단 차콘 루이즈(멕시코, 위원회 위원)는 모두 찬성 의견을 밝히며, 글로벌 감리교회는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운동이며, 『교리와 장정』은 단순히 강제력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격려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안 제1454호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총회는 Brandon Nichols 목사(버지니아)를 지역 교회 입법 위원회 발표자로 초청했다. 니콜스는 위원회가 채택을 권고하는 청원서인 일괄동의안 LC4A를 동의했으며, 이 안건은 채택되었다. 또한 위원회가 기각을 권고하는 청원서인 일괄동의안 LC4B를 동의했으며, 이 안건 역시 채택되었다 — 이를 통해 해당 청원 각각을 기각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를 비준했다.

청원안 1149호 — 목사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교에 머무는 동안 교회나 학원 선교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허락하기 위해 『교리와 장정』을 개정하는 내용 — 은 위원회에서 수정된 대로(“~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변경) 개별적으로 상정되었다. 위원회 회원인 Victoria “비키” 해리슨 목사(플로리다)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Pastoral 지도야말로 매우 중요한 책임이라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홀리 데니스 킬로(미드-텍사스)와 윌리엄 “윌” 베넷 그레고리(미드-텍사스)는 모두 이 조항에 반대하며, 해당 조항이 제432항(목요일 채택된 조항으로, 목회자가 일반적으로 집을 떠나 사는 회원들을 돕도록 요구하는 내용)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이미 해당 조항에서 다루고 있는 군 복무 중인 젊은 성인이나 프로 스포츠 선수들과 다를 바 없는 ‘대학생’이라는 범주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안 1149호는 먼저 결론이 나지 않은 거수 투표에서, 이어 투표 기기를 통한 투표에서 지지받지 못했다.

그 후, ‘교리와 장정’에 수록된 대학생에 관한 기존 431항(범위가 더 좁은 조항)을 제거하자는 청원 제1385호가 상정되었는데, 위원회는 431항을 432항과 함께 유지하도록 권고하며 이 청원을 기각할 것을 제안했다. 킬로와 이사벨라 “벨라” 조세핀 듀크(미드텍사스)는 청원안 1385호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즉, 청원안 1149호가 부결되어 제432항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제431항은 중복되므로 제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위원회 회원인 에이미 크리스틴 기어하르트(버지니아)는 학원 선교 단체의 수가 적더라도 제431항에서 대학생들에게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청원안 1385호는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 이에 따라 제431항과 제432항은 모두 이날 저녁 토론 전과 똑같은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21:00가 지난 후, 의장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폐회 공지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비서에게 말을 넘겼다. 호텔 셔틀은 22:00에 운행을 종료한다고 보고되었으며, 델리게이트들은 혼자 또는 어떤 거리라도 걸어서 호텔로 돌아가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받았다. 제8 감독 지역 델리게이트와 자원봉사자들은 회의가 끝난 후 5호 회의실로 초대되어 Carolyn Moore 감독과 만나 함께 기도하며, 앨러게니 웨스트, 하트랜드 등으로 구성된 이 지역에 감독님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의 대상 청원

위원회의 조치

6일 차 달력. 일괄동의안 식별자에서 숫자는 회의 일자, 문자는 처리 결과를 나타내며, A는 ‘승인’, B는 ‘기각’, C는 ‘참조’를 의미합니다. 일괄동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입니다. 이번 주 초에 이루어졌으며 이전 호에서 이미 보도된 위원회의 조치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시 다루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청원서 하단에 인쇄되어 있으며, 이는 각 위원회의 ‘최종안(FINAL)’을 바탕으로 생성된 것이지 직접 입력된 것이 아닙니다. 일반 밀줄과 취소선은 청원인이 직접 표시한 것이며, 굵은 밀줄과 취소선은 위원회가 나중에 추가한 것입니다.

회의 — 청원 1건

개별 심의 — 일괄동의안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음

청원 1188 | ¶ 709.2 | 387쪽 연회의 재정적 책임 명확화

개정안 가결: 찬성: 32 찬성 / 2 반대 / 0 기권

개정:

2. 연회를 위한 연대 기금 비율을 결정하고 (¶ 711.1), 연회 자금 조달을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며, 연회의 사역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자금이 어떻게 배분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 연회. 2. 연회(¶ 711.1)에 대한 연대 기금 비율을 결정하고, 연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며, 연회의 사역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명시한 예산을 통과시키고 공표한다.

헌법, 연대 조직, 재정 — 청원 9건

일괄동의안 CCOF-6B — 청원 기각

청원 1133 | ¶ 8XX | 466쪽 (신규) 글로벌 기도 네트워크

부결 결과: 찬성: 47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256 | ¶ 813.3 | 536쪽 ‘글로벌한 통합, 지역적 유연성’: ¶ 813.3 삭제

부결 결과: 찬성: 47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서 1470 | ¶ 805.5 | 495쪽 성스러운 결혼 예식

원안대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47 찬성 / 0 반대 / 0 기권

일괄동의안 CCOF-6C — 청원 참조

청원 1026 | ¶ 8XX | 461쪽 글로벌의 통합 위원단

하나님 나라 확장 위원단에 참조됨: 찬성: 47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177 | ¶ 8XX | 467쪽 (신규) 연회 평신도 지도자 위원회 설립

연대 협의회에 참조됨: 찬성: 37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안 1243 562쪽 신규 ¶ 8XX 연대 청소년 사역의 설립

연대 협의회로 회부됨: 찬성: 37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제1330호 566쪽 미국 외 지역 목회자 및 직원에게 제공되는 연금 혜택을 정하는 결의안

재정·행정·연금·복지제도 위원회에 참조됨: 찬성: 29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제1333호 | ¶ 8XX | 470쪽 (신규) 청소년 위원회 설립

연대 협의회에 참조됨: 찬성: 37 찬성 / 0 반대 / 0 기권

개별 심의 — 일괄동의안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음

청원 제1093호 | ¶ 210.1 | 442쪽 상소 관련 연대상소협회의의 권한 및 책임 명확화

원안대로 가결: 찬성: 47 찬성 / 0 반대 / 0 기권

제출된 원문 전문:

본 청원은 ¶ 210.(1)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1) 해당 총회 출석 및 투표권 있는 회원 5분의 1 또는 교회의 현직 감독 지도자 과반수의 항소에 따라, 총회의 어떠한 조치나 결정에 대한 합헌성, 또는 그 의미, 적용, 효력을 판단하기 위함이다.

(1)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의 5분의 1이 항소하거나, 총회의 현직 감독 지도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총회의 어떤 행위나 결정의 헌법성, 또는 그 의미·적용·효과를 판단합니다.

교리와 성례전

청원 1434 — 전문 재게재, 6일 차 조치가 아님

청원 1434 | ¶ 108 | 29쪽 BDD의 기본 원칙 섹션에 개정된 총칙(감리교회의)을 배치

개정안 가결: 찬성: 52 찬성 / 0 반대 / 1 기권

다음은 2026년 9월 2일 수요일자 《데일리 저널》에 위원회의 표결 결과와 처리 내용만 게재되어 실수로 누락된 청원 제1434호 개정의 전문입니다.

개정된 전문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청원은 ¶ 108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새로운 ¶ 404에 배치하며, 현행 ¶ 404 및 그 이후 단락들의 번호를 다시 매깁니다.

『교리와 장정, 2024년판』에서 ¶ 108을 삭제한다.

¶ 403 다음에 다음 내용을 새로운 단락으로 삽입하고, 그 뒤의 단락 번호를 다시 매기십시오.

글로벌 감리교회의 성격, 목적 및 총칙(감리교회의)

1739년 말, 런던에서 여덟 명 내지 열 명가량의 사람들이 Wesley 씨를 찾아왔는데, 그들은 죄에 대해 깊이 깨달은 듯 보였고, 구속을 간절히 사모하며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2, 3명이 더 와서 그리한 것처럼, 그들은 웨슬리가 시간을 내어 그들과 함께 기도하여 주며 그들의 머릿속에 항상 맴도는 닥쳐올 천벌로 부터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 큰 일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그는 그들이 모두 함께 모일 수 있는 날 하루를 정하여 그 후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자 수가 나날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오게하여,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충고를 그때 그때 해 주었고, 항상 그들의 필요에 적합한 기도로 그 모임을 끝맺었다.

이것이 처음 유럽에서 시작되어 그 후에 미국에서 모이게된 연합 신도회의의 시작이었다. 그러한 사회는 다른 아닌 “경건의 형식을 갖추고 그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함께 기도하고, 권면의 말씀을 듣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서로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돕기 위해 연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실제로 성취하고 있는가를 더 쉽게 알기 위하여 각 신도회를 속회라고 부르는 작은 모임으로 주거 지역을 따라 나누었다. 한 속회에는 약 12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지도자로 불렸다. 그것은 그 또는 그녀의 의무였습니다:

1. 자신의 반에 속한 각 교인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1)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묻고, (2) 상황에 따라 조언하거나, 책망하거나, 위로하거나, 권면하며, (3) 설교자, 교회,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각자가 기꺼이 내어주는 헌금을 받는 것.

2. 매주 한 번씩 신도회의의 목회자와 스튜어드들을 만나, (1) 병든 자나 질서를 어기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 목회자에게 알리고, (2) 스튜어드들에게 지난주 동안 각 속회에서 받은 것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예전에는 이러한 단체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던 조건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다가올 진노를 피하고, 자신의 죄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진실로 원한다면 그것은 그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감리교인들 사이에서 속회가 널리 사라지게 되었으며, 웨슬리가 이러한 책임감 있는 소그룹을 위해 제정한 ‘총칙’은 점차 사멸한 유물처럼 취급받게 되어, 진지한 헌신을 기대하지 않은 채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흔해졌다. 그러나 21세기 초반에 들어서면서, 감리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속회와 밴드 모임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열의는 역사적인 감리교 전통을 계승하며, 기본적인 교리적 정통성, 교회 운영의 청렴성, 선교적 효과, 그리고 웨슬리안 영성과 신학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확고히 다짐하는 새로운 교단으로서 ‘글로벌 감리교회’가 설립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시점에서, 존 웨슬리가 작성한 ‘감리교회 회중을 위한 총칙’의 일부 내용은 18세기 영국이라는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매우 잘 반영하고 있었으며, 또한 글로벌의 많은 감리교인들에게 일관되게 인정받거나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2024년,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글로벌 감리교회의 제1차 총회는 “역사적인 총칙의 핵심 가치를 존중하고 계승하는” 개정된 총칙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촉구하는 법안을 채택했으며, 동시에 오늘날의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의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모든 목회자가 안수식에서 ‘우리 교회의 총칙(감리교회의)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할 때 실제로 지킬 것으로 현실적으로 기대되는 약속에 초점을 맞춘” 개정된 총칙(감리교회의)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감리교회 총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드러내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 것이며,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할 것이며, 특히 다음과 같은 일반적으로 자행되는 것들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여기는 것.

공동 예배에 참석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공동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주님의 날을 모독하는 것.

음주: 알코올이나 기타 약물로 인한 오락적 취기; 또는 알코올이나 기타 정신을 변화시키거나 중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더 이상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 혹은 절제 없이 과도하게 알코올을 섭취하는 행위.

학대적인 경제적 착취, 특히 근로자에 대한 착취적·모욕적·비인간적인 대우, 성매매를 포함한 타인의 노예화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그리고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이고 착취적인 포르노 및 성매매 산업에 가담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행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언약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형태의 성적 관계에 관여하는 것.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과 싸우거나, 다투거나, 난투를 벌이거나, 사소한 소송이나 보복성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타인을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인종 차별적인 언행; 악으로 악을 갚는 행위.

상품을 불법적으로 매매하거나, 정당한 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금을 회피하거나, 그 밖의 모든 비즈니스 거래, 세금 납부 및 기타 재정적 문제에서 철저히 정직하지 못한 행위.

자비롭지 않거나 유익하지 않은 대화나 험담; 특히 정부나 영적 지도자 직분을 맡은 이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에 대해 가혹하거나 비방적이거나 지나치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것;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나 자신과 타인의 거룩함에 해를 끼치는 대화에 참여하는 것.

다음과 같이, 거룩함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정면으로 상반되는 것으로 알려진 행위들:

수치심을 모르는 옷차림을 하거나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

우리 자신이나 타인의 거룩함을 해치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

우리 안에 죄악된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그 밖의 어떤 방식으로든 거룩함에 해가 되는 미디어나 기타 사회적 오락 활동에 참여하는 것.

게으름이나 지나친 방종.

탐욕: 은퇴 후 자신이나 타인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지상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거나, 도덕적 경계를 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부를 축적하려 하거나, 과도한 쇼핑이나 도박을 일삼거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회나 자선 단체에 아낌없이 공헌하기를 거부하거나, 하나님보다 물질적 자원에 의지하는 것.

대금을 지불할 확률 없이 빌리거나 대금을 지불할 확률 없이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73a 인종, 부족 또는 성별을 이유로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조롱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73b 자녀(친자이든 입양 자녀이든)를 방치하고, 부모의 사랑을 베풀지 않으며, 기독교인 부모로서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위.

73c 배우자를 정서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학대하는 행위.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드러내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선함을 행함으로써;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동료로서 존중하고,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서 모든 면에서 자비를 베풀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능한 모든 종류의 선함을 행하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선함을 베풀며:

그들의 육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따라 교회와 궁핍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벌거벗은 이에게 입을 것을 입혀 주며, 병든 자나 갇힌 자를 방문하거나 도우며, 사회 속의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모든 이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책망하며, 권면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한 선함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그 그릇된 교리를 발로 짓밟아야 합니다.

선행을 베풀되, 특히 믿음의 가족이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에게 베풀고, 다른 이들보다 그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며, 서로에게 물건을 사고팔고, 사업에서 서로 돕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은 자기 편과 그들만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연속성 있는 근면과 검소함으로, 복음이 비난받지 않도록 하라.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려가며, 제자도의 대가를 기꺼이 감수하고, 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비방과 학대를 기꺼이 감수하며,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온갖 악한 말을 거짓으로 퍼뜨리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일 때입니다.

90a 사랑과 믿음, 상호 존중이 넘치는 기독교적 결혼 생활을 함양함으로써.

90b 아이들에게 기독교 믿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기독교인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함으로써.

90c 태아를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신도회들에 계속 소속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에 대한 소망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모든 의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적 예배와 기독교인의 교제

말씀 사역은 읽거나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

가족 및 개인 기도.

성경 연구

금식 또는 금욕.

이것들은 우리 교회의 총칙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가르쳐 주신 것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실천에 있어 유일하고도 충분한 규칙입니다.

사회적 증언

청원 1111 — 전문 재게재, 6일 차 조치가 아님

청원 1111 | ¶ 302.3 | 56쪽 태아와 산모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조항 추가

수정안 가결: 찬성: 38 찬성 / 0 반대 / 0 기권

이 문구는 이전 일간 저널에 있는 청원 1111에 관한 모든 언급을 완전히 대체합니다.

개정된 전문 전체:

본 청원은 ¶ 302.3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3. 우리는 발달 단계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생명이 신성하다고 믿습니다. 모든 생명의 신성함은 우리로 하여금 낙태 관행에 저항하도록 이끕니다. 모든 생명의 신성함은 우리로 하여금 낙태 관행에 저항하도록 이끕니다. 단, 생명이 서로 충돌하여 산모와 태아의 안녕이 위태로운 경우, 아기를 별도의 환자로 돌보면서 조기 분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모나 태아의 생사가 위태로운, 생명이 서로 충돌하는 비극적인 상황에서는 조기 분만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기와 산모를

별도의 환자로 구분하여 치료해야 합니다. 우리는 낙태를 피임 수단이나 성별 선택의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생명의 주님의 제자인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도로 깊이 속고하여, 적절한 돌봄, 상담, 또는 자원을 받지 못한 채 의도치 않은 임신을 겪은 여성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고민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이 생명의 주님의 제자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봄과 상담,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의도치 않거나 원치 않는 임신을 겪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창세기 1:27, 창세기 9:5-7, 22:22-23; 출애굽기 22:22-23, 시편 139:13-16; 야고보서 1:27.) (출 22:22-23; 시 139:13-16; 야고보서 1:27).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ይህ ገጽ ሆኖ ተቀላቅ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